

상임이사 및 사외이사 모집공고

둔내농협의 경영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실익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전문경영인(상임이사) 및 외부 인사(사외이사)를 모집합니다.

- 아 래 -

1. 모집대상 및 인원

- ☐ 상임이사 1명
- ☐ 조합원이 아닌 이사(사외이사) 1명

2. 응모자격

- ☐ 우리 농협 정관 제56조제1항 각호(제10호, 제12호 제외)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동 정관 제108조 또는 제112조에 해당되는 자

3. 제출서류

- 후보자등록신청서(소정양식) ----- 1부
- 이력서, 자기소개서 ----- 1부
- 경영계획서(상임이사용) ----- 1부
- 경력·자격증명서 ----- 1부
- 최종학력(학위)증명서 ----- 1부
- 기본증명서 ----- 1부
- 주민등록등본, 초본 ----- 1부
- 연체채무유무확인서(소정양식) ----- 1부
- 범죄경력조회서(실효된 형포함) ----- 1부
- 비경업관계사실확인서(소정양식) ----- 1부
- 개인(신용)정보조회동의서(소정양식) ----- 1부
- 공명선거실천서약서(소정양식) ----- 1부

4. 제출기간 : 2025. 01. 13(월) ~ 2025.01.14(화) (09:00 ~ 17:00)

5. 제출처 : 둔내농협 총무팀(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77, TEL: 033-340-8911)

6. 기타

- 지원서는 우편접수하지 않으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응모자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농협 총무팀으로 문의바랍니다.
- 제출서류는 둔내농협 홈페이지(<http://dunnae.nonghyup.com>) 참조

2025년 01월 08일



둔내농업협동조합



참고사항 : 농협 임원의 자격 관련 법령

1. 경업관계 법령

법령	내 용
농협법	제52조(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)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.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농협법 시행령	제52조의3(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) ① 법 제52조제5항(법 제107조, 제112조, 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, 해당 조합,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 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·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
농협법 시행령 [별표2]	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(제52조의2제1항 관련) 1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,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3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산림조합, 품목별·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4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5. 「우체국 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신관서가 수행하는 사업 6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대리점·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가 수행하는 사업 7. 「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업, 대부중개업 및 그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 8.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업 9.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농약판매업 10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·축산업용 기자재를 농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업 11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에 따른 석유판매업 12. 「사료관리법」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 13. 「종자산업법」에 따른 종자업 14. 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양곡판매업 및 양곡가공업 15. 「수산물가공처리법」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16. 「인삼산업법」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17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18. 그 밖에 이사회가 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
둔내농협 정관	제108조 또는 제112조(자격제한 등)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선거권이 없다. 4 또는 3.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

2. 임원의 결격 사유(둔내농협 정관 제56조 ①항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단,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.

- 1호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- 2호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3호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4호.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5호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호. 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(改選)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호.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8호. 법 제172조 또는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58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·제59조(기부행위의 금지·제한 등 위반죄)·제61조(허위사실 공표죄)부터 제66조(각종 제한규정 위반죄)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9호.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70조(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)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10호.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60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
- 11호.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, 중앙회 또는 법 제49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(보증채무를 제외한다)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
- 12호.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(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)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가.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(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)을 이용한 금액 : 1,300만원 이상(필수)